

의안번호	2211169
의 퇴 인	박성민 의원
회 답 일	2025. 7. 25.
추계번호	25A3526

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21조의3(기술지주회사의 설립)	○ 국가,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공공연구기관이 설립하거나 설립하려는 기술지주회사에 출자할 수 있음(제7항)	재량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등 근거 규정
1	안 제21조의3(기술지주회사의 설립)	○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안 제21조의3제7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연구기관이 설립하거나 설립하려는 기술지주회사에 출자하면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됨
 - 또한, 개정안은 공공연구기관이 설립한 기술지주회사의 최소 지분을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30으로 완화하고 있어(안 제21조의3제4항) 공공연구기관 설립 기술지주회사의 수가 증가할 수 있음
- 다만 산업통상자원부 자료에 따르면, 현재까지 법 제21조의3에 따라 설립된 공공연구기관 기술지주회사가 없으며, 향후 설립될 기술지주회사의 수, 그리고 국가 등의 출자 규모를 추정하는 데 한계가 있음
 - 참고로, 현행 법에 근거한 공공연구기관은 국공립 연구기관, 「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을 말함

[표 1] 공공연구기관의 범위(법 제2조제6호)

공공연구기관	가. 국공립 연구기관
	나. 「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 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- 한국과학기술연구원,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, 한국생명공학연구원,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, 한국한의학연구원, 한국생산기술연구원, 한국전자통신연구원, 한국건설기술연구원, 한국철도기술연구원, 한국표준과학연구원, 한국식품연구원, 한국지질자원연구원, 한국기계연구원,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, 한국전기연구원, 한국화학연구원, 한국원자력연구원, 한국재료연구원,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
	다. 「특정연구기관 육성법」 제2조를 적용받는 특정연구기관
	라.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 마. 그 밖에 「민법」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개발과 관련된 법인·단체로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(이하 “기술이전·사업화”라 한다)를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관 1. 국가, 지방자치단체,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(이하 “국가등”이라 한다)으로부터 연구개발 사업에 드는 연간 비용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(出捐)받거나 보조받는 법인 또는 단체 2. 국가등으로부터 자본금 또는 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(出資)받거나 출연 받은 법인 또는 단체

자료: 「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」, 「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I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추계세제총괄과	윤주철	권아영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윤주철	02-6788-4655	yjc@nabo.go.kr